

【붙임】

청렴[○]한[○]세상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지역 브랜드 농수산물 지리적표시 및
품질인증 사업 투명성 제고

2015. 1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목 차

| | |
|--|----|
| I. 추진배경 | 1 |
| II. 제도 및 운영현황 | 2 |
| III.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12 |
|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 13 |
| V.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14 |
| <중앙행정기관> | |
| 1.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운영·관리 강화 | 14 |
| 2. 러브미(米) 및 쌀 품종관리 마크 운영·관리 내실화 | 25 |
| <지방자치단체> | |
| 3. 지자체장 품질인증 조례근거 마련·명확화 및 남설 방지 | 29 |
| 4. 지자체장 품질인증 심사 기준·절차의 투명성 확보 | 38 |
| 5. 지자체장 품질인증 사후관리 철저 | 48 |
| VI.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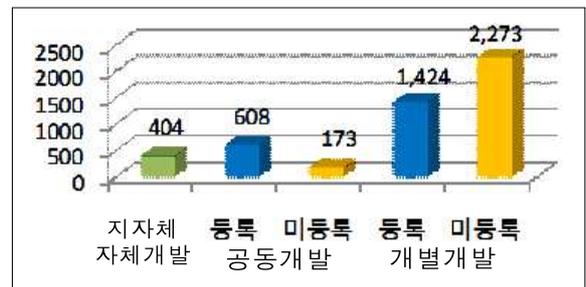
I

추진 배경

-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FTA 대응 등을 위해 농수산물 브랜드 개발 후 상표·인증 등록 등 급격히 확산
 - 중앙에서는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러브미 업무표장 등 지역 특산품과 관련한 인증 등 관련 제도 운영
 - ※ 지리적표시(169), 지리적표시 단체표장(302), 러브미 업무표장(10), 쌀 품종명 관리마크(92)
 -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주도로 브랜드(404개)를 개발 후 품질 인증에 활용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에서 자체 공동·개별브랜드를 개발·사용
 - ※ 137개 지자체에서 404개의 농수산물 품질인증 관련 사업 추진

< 지방 브랜드 개발 현황 >

| 구분 (단위:개) | 지자체 자체 개발 | 생산자단체 등 | | |
|--------------|--------------|---------|----------|----------|
| | | 계 | 공동 개발 | 개별 개발 |
| 계 | 404 | 4,478 | 781 | 3,697 |
| 등록 | 404 | 2,032 | 608 | 1,424 |
| 미등록 | - | 2,446 | 173 | 2,273 |



- 중앙·지자체의 관심과 재정 지원 등에 힘입어 브랜드가 양적 성장을 하였으나 유사제도 중복, 인증기준 미흡, 남발 등으로 재정낭비 초래
 - 지리적표시제 중복(75개)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31억, 재정지원은 34억('12~'14년)
 - 지자체 브랜드 수는 총 404개이며 개발비 79억, 홍보비 658억('09~'04년) 등 투자
- 특히 지자체의 경우 투명한 개발·운영 및 관리가 미흡한 브랜드는 소비자 신뢰하락 및 그에 따른 구매 저조로 생산 농·어가 피해 초래
 - ※ 404개 지자체 브랜드 중 191개가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 하게 운영
- 따라서 농수산물 브랜드 지리적표시, 인증 등에 대한 공정·투명한 기준·관리 등을 통해 부패를 차단하고 농·어가 보호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관련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II 제도 및 운영 현황

1 각 제도의 개관

□ 중앙행정기관의 제도

-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농수산물 브랜드 진흥 제도는 **지리적표시 관련 제도, 러브미 업무표장 및 쌀 품종명 관리마크**가 있음

| 지리적표시 관련 제도 | | | 러브미 업무표장 | 쌀 품종명 관리마크 |
|----------------------------------|------------|------------|-------------|---------------|
| 지리적표시제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 | |
| 농식품부(산림청 ¹⁾), 해수부 | 특허청 | 특허청 | 농식품부 | 농식품부 |

- ⇒ 부패영향평가는 지역의 고유 브랜드로 명성을 갖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표시·품질 보증 기능의 지리적표시 관련 제도, 러브미 업무표장, 쌀 품종명 관리마크에 한하여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 지자체는 지역 고유의 특산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 후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 없이 조례·내부규정 등으로 품질인증 제도 운영**
- 지자체 개발 농수산물 브랜드는 총 404개로, 이중 조례에 의한 경우가 213개, 내부규정 조차 없는 경우가 147개, 자체지침이 43개임

[브랜드별 운영 현황]

(단위 : 개)

| 브랜드(총계) | 조례 (213) | | | 규칙 | 자체지침 | 내부규정 없음 |
|---------|----------|-------|-------|----|------|------------|
| | 조례 | 조례+규칙 | 조례+훈령 | | | |
| 404 | 68 | 144 | 1 | 1 | 43 | 147 |

< 자료 :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 ⇒ 부패영향평가는 지자체에서 개발한 농수산물 브랜드별에 따른 조례 등 규정 여부, 심사기준·절차, 사후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²⁾

1) 산림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농식품부로부터 임산물 및 그 가공품과 관련한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지리적표시의 등록,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확인·조사·점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2) 조례별이 아닌 브랜드를 기준으로 통계를 추출하였으며, 그 이유는 조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조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조례가 있는 경우에도 브랜드가 조례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훈령, 지침, 지침이 없는 경우 등으로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임

□ 중앙행정기관의 제도

1) 지리적표시 관련 제도

○ 지리적표시의 도입 배경

-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³⁾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두고 있음

* TRIPs 협정 제22조 제1항 :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geographical origin)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표시(indication)”

○ 지리적표시 관련 제도의 연혁

- 지리적표시 : '96년 한·EU FTA 협의과정에서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요구에 따라 '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현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 도입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Trips 협정의 지리적표시 개념을 상표법에 도입하여 지적재산권 형태로 보호하기 위해 '04년 「상표법」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근거⁴⁾ 마련
-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 한-미 FTA⁵⁾에 따른 합의사항 반영을 위해 '11년 「상표법」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도입 (시행은 '12.4.1.)

※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15년 12월 현재 등록된 건이 없으며 대부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 주요내용으로 분석하지 않음

3) TRIPs 협정이란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이르는 것으로, 국제 무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그것이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여 만들어진 협정임. TRIPs에서 제시하는 국제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범을 기초로 여러 나라에서는 무역 대상국과의 쌍방협약으로 TRIPs에서 제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 간 규정을 맺고 있음

4) TRIPs협정 제23조의 보호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상표법」 일부를 개정한 바 있으나, 당시는 지리적표시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는 등 소극적·간접적 보호제도만 있었고 지리적표시를 등록하여 권리로 보호하는 적극적 제도는 부재

5) 한-미 FTA 협정문 제18.2 제2항에서 “각 당사국은 상표가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러브미 업무표장

- 쌀 소비 촉진 홍보, 우수 브랜드 쌀·제품 등에 사용하기 위해 '02년 농림부가 브랜드 개발 후 특허청에 업무표장⁶⁾으로 등록('04.9.6.)
 - 농림부는 '05년 훈령으로 「러브미 업무표장 관리지침('05.7.27.)」을 제정한 후 우수 브랜드 쌀 및 쌀 관련 제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중

3) 쌀 품종명 관리마크

- 고품질 쌀에 대한 관심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 등 차원에서 품종*, 생산지 등을 쌀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07년 양곡표시제 도입
 - * 품종명의 경우 해당 품종의 순도가 80% 이상인 경우 '새추정', '삼광' 등 단일 품종으로 표시하고, 그 외는 품종별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으로 표시
 -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쌀 단일 품종 표시제 정착을 위해 '10년 「쌀 품종명 관리마크 표시업체 지정·운영 지침('10.9.29.)」을 제정하여 쌀 품종명 관리마크 부여

※ 단일품종 표시율은 '10년 20.9%, '11년 26%에 불과하였음

□ 지자체의 제도

- 지방자치제도 실시('95년) 이후 WTO 체제하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민 수익창출 차원에서 조례 등으로 품질인증 사업 추진
 - 지자체별로 운영방식이 다양하나 전반적 특성은 지역 내 고유 토착 농산물에 대해 지자체장이 심사 후 브랜드(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 ※ 정부 차원에서도 2000년대부터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 정책(농식품부), 지역 특산물 권리화(특허청)를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화를 지원하면서 지자체장 명의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이 크게 증가

6) 업무표장이란 한국소비자원, 대한변호사협회,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가 그 비영리업무에 대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5년)

□ 중앙행정기관의 제도

1) 지리적표시 관련 제도

- TRIPs 및 FTA : 지리적표시 관련 제도는 WTO의 TRIPs 협정⁷⁾과 한·EU FTA,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법 제정에 따른 것이며, 지리적표시 보호방식은 국가별로 상이

[국가별 지리적표시 보호방식⁸⁾]

| 국가별 | 보호방식 | 관할기관 |
|---|------------------------------|-----------------|
| EU회원국 중 영국,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 별도의 지리적표시 등록법 및 상표법으로 보호 | 특허청, 농림부 |
| 미국, 호주, 독일(단체상표로 보호), 중국 등 | 상표법의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 | 특허청 |
| 프랑스(출처표시, 원산지명칭),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일본 | 별도의 지리적표시 등록법으로 보호 | 농림부 (별도기관은 프랑스) |
| 거의 모든 국가 | 부정경쟁방지법 ⁹⁾ 등으로 보호 | - |

- 국내법 : 상표법 및 별도의 지리적표시 등록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¹⁰⁾, 「상표법」으로 보호

- 유사점으로는 TRIPs 협정의 지리적표시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상품에 대한 명성, 품질 등을 등록요건으로 한다는 점이며,

7)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의미하며 TRIPs는 이를 보호(TRIPs 제22조)하고 있음. TRIPs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로는 ①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상품과 관련된 것에 한하며 서비스에 관련된 것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② 상품에 확립된 품질(given quality) 또는 사회적 평가 내지 명성(reputation) 또는 특성(characteristic)이 있고, 그것이 당해 상품의 지리적 유래에서 기인한 것이어야 하며, ③ 품질, 명성, 특성과 지리적 요소의 관련성이 본질적(essential)이어야 함. 다른 국가의 지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온 유럽대륙 국가는 특별보호대상을 모든 품목에 대해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호주 등 유럽대륙 국가와 언어와 지명을 공유하고 있는 신대륙 국가는 지리적 표시 보호의 강화로 관련 산업이 받을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음

8)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연계방안”, 농식품 지리적표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 회의 자료, 2015년도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

10) 해양수산부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별도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통합법을 만들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제명을 개정(11.6.23. 국회 본회의 통과, 7.21. 공포)하여 농산물·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능을 통합·운영하게 됨

- 차이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품질 관리’에, 「상표법」은 ‘상표’ 자체의 보호를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점임

* 농식품부에서도 지리적표시권 강화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09.6.9.)을 통해 민사적 특례로 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¹¹⁾ 및 사후관리 규정 도입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비교]

| 구분 | 지리적표시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
| 법률근거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99년 도입) | ○ 상표법 ('04년 도입)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 |
| 등록대상 | ○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 ○ 제한 없음 (모든 상품) ※ 이천 도자기, 안성 유기 등 공산품도 등록 가능 |
| 심의기구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 (15명) | ○ 심사관 (1인) |
| 등록요건 | ○ 품목의 유명성 및 역사성 ○ 명성·품질 또는 기타 특성이 특정지역의 생산 환경적·인적 요인에서 기인 ○ 해당지역에서 생산과 가공 ○ 기타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것 | ○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에 특성 ○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과의 연계성 ○ 해당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 |
| 등록절차 | ○ 신청→등록심의회 심의 및 현지확인→등록 신청공고(2개월간)→이의신청(심의)→등록 및 공고 | ○ 출원→심사관 심사→출원공고→이의신청→3인합 의체 심사→등록 및 공고 |
| 등록효과 | ○ 지리적표시 배타적 사용 가능 ○ 지리적표시권 보호 (영구적) ○ 지리적표시 마크()사용 | ○ 지적재산권으로 독점 배타권 행사 가능 ○ 단체표장제 보호 (10년사용, 갱신 가능) ○ 별도 마크 없음 ※ 등록된 단체표장(로고) 및 단체표장번호 사용 |
| 권리구제 | ○ (형사)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민사) 권리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 ○ (형사)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침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민사) 권리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
| 사후관리 | ○ 등록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명문화 ○ 사후관리 소홀시 제3자의 심판청구에 의한 등록 취소 가능 ○ 행정청에 의한 직권 등록취소 가능 | ○ 등록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규정 없음 ○ 사후관리 소홀시 제3자의 심판청구에 의한 등록 취소 가능 ○ 행정청에 의한 직권 등록 취소 규정 없음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및 특허청 제출자료 >

※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 증명표장권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하며, 법인에 한하지 않고(자연인, 기관도 가능), 품질보증 기능,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차별없이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제외하고 상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규정 적용 (현재 7건이 출원된 상태이며 등록은 없는 관계로 비교표에서는 제외함)

11) 지리적표시 관련 심판 청구 방식, 심판 및 재심의 절차와 효력규정 등을 신설하며, 제심절차·제심청구 및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소송 등에 대하여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 (불복절차 : 지리적표시 심판위원회 → 특허법원 → 대법원)

2) 러브미 업무표장

- 농식품부는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04.9.6.) 후 「러브미 업무표장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운영
 - 평가 2년 연속 우수 브랜드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 2년의 사용기간 내에서 러브미 표장 사용권을 부여하고, 상품에 부착·홍보
 - ※ 러브미 업무표장은 기간 만료('14.8.4.)에 따라 특허청에 갱신을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10년간('24.9.6.) 사용 가능
 - 관리지침에서 임의사용 또는 목적 외 사용, 사용방법 미 준수, 사용기간 경과, 유통질서 문란 등의 경우 사용중지, 사용취소 등 규제

3) 쌀 품종명 관리마크

- 쌀에 대한 단일품종 표시(쌀과 현미에만 적용)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 유도를 위해 '11년부터 농관원 자체 사업으로 지역의 우수 쌀 상품에 대한 「쌀 품종명 관리마크」 제도 도입
 - 지정 및 관리기준은 계약재배, 종자, 원료벼 구분관리 및 가공, 양곡 유통관련 법령 준수 등이며, 사용기간은 별도 규정 없음

□ 지자체의 제도

- 지역마다 다수의 브랜드를 개발 후 조례로 제도화 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자체지침 또는 내부지침이 없는 경우도 있어 제도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을 보임
- 또한 조례로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우에도 심사 기준·방법·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서 규정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 등 제도의 운영에서도 조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브랜드 별로 살펴보면 총 404개 지자체 브랜드 중 213개는 조례로, 147개는 내부규정 조차도 없으며, 43개는 자체지침 등으로 운영

4 각 제도별 운영 현황

□ 중앙행정기관의 제도

1) 지리적표시 관련 제도

○ 지리적표시제 (농식품부, 산림청, 해수부)

- TRIPs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해 '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였고, '02년 보성녹차의 첫 등록을 시작으로 169개 품목(농·임산물 148건, 수산물 21건)이 등록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단위 : 건)

|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7월현재) | 계 |
|-----------|-----|-----|-----|-----|-----|-----|-----|-----|-----|-----|-----|-----|-----|---------------|-----|
| 지리적 표시 | 1 | 1 | 1 | 10 | 20 | 21 | 16 | 16 | 18 | 13 | 10 | 9 | 8 | 4 | 169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 '04년 「상표법」 개정(시행은 '05년 7월)후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권리화 사업 지원에 힘입어 '06년 정남진 장흥표고의 첫 등록을 시작으로 302개 품목이 등록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현황¹²⁾]

(단위 : 건)

|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7월현재) | 계 |
|----------|-----|-----|-----|-----|-----|-----|-----|-----|-----|-----|-----|-----|-----|---------------|-----|
| 단체 표장 | - | - | - | - | 1 | 10 | 8 | 24 | 52 | 36 | 31 | 55 | 53 | 32 | 302 |

< 자료 : 특허청 제출자료 >

12) 농식품부(해수부, 산림청)의 지리적표시제의 경우 등록건수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특허청의 경우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표시제는 품질관리 기능에 따른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특허청과는 달리 연구용역 등 예산 지원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재정지원을 살펴보면 특허청의 경우 '06년부터 지리적표시 권리화 사업으로 9년간 국비 45억원 포함 총 72억원 지원¹³⁾

[지리적표시 권리화 재정지원 현황 ('06년~'14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국비 | 4,483 | 700 | 500 | 416 | - | 239 | 495 | 918 | 637 | 578 |
| 지방비 | 2,771 | - | - | - | - | 239 | 495 | 918 | 587 | 532 |
| 합계 | 7,254 | 700 | 500 | 416 | - | 478 | 990 | 1,835 | 1,225 | 1,110 |

※ '10년부터 지자체와 공동사업(5:5매칭) 진행/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재정지원('14년 6건 1.5억원) 포함 금액
 < 자료 : 특허청 제출자료 >

2) 러브미 업무표장

- 러브미 업무표장은 '02년 당시 농림부가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브랜드를 개발 후 '04년 업무표장으로 등록

※ 러브미 사업은 브랜드 개발 및 광고비로만 65억원을 사용하는 등 100억원 가량이 투입된 대규모 쌀 소비촉진 프로젝트 (국민일보, '04.8.12.)

- 러브미 사용기간은 2년이며, 사용범위는 쌀 소비촉진 홍보, 우수 브랜드 쌀 및 관련제품 인증, 쌀 소비촉진 행사 등에 활용



13) 농식품부(농관원)는 지리적표시 신규 등록단체에 포장재 제작비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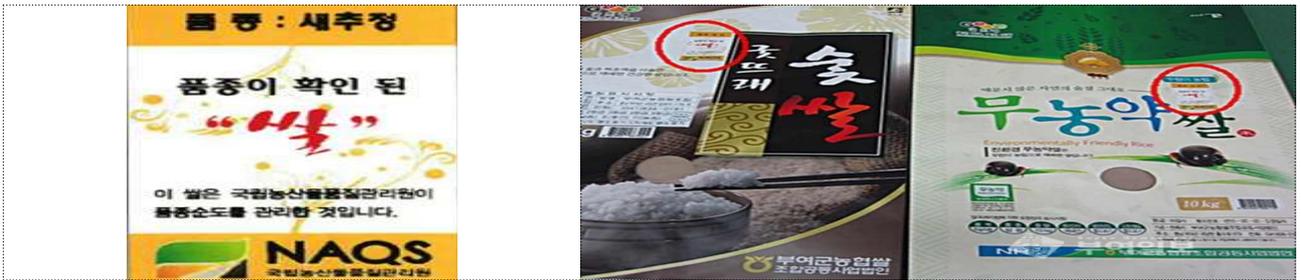
-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볼 때 22개 업체에 러브미 사용권을 부여하였고, 현재 사용권을 부여받아 사용 중인 업체는 10곳임

※ 우수브랜드 쌀 선정된 경영체에 대하여는 ‘RPC 경영평가(2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1~3점)’ 및 ‘들녘경영체 육성사업(5점)’ 심사 시 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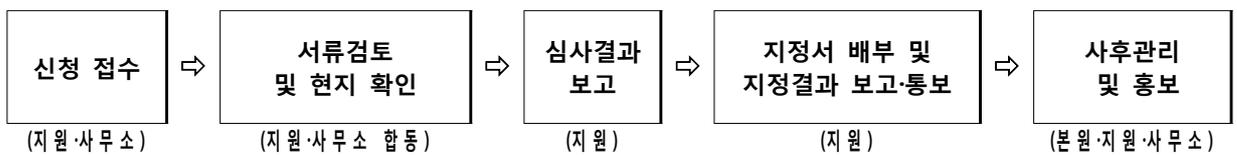
- 사후관리의 경우, 임의사용 등의 경우 러브미 업무표장 사용중지 및 취소토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중지·취소 사례는 없음

3) 쌀 품종명 관리마크

- 쌀 품종명 관리마크는 단일 품종명 표시율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쌀 품종순도 80% 이상 제품에 대해 관리마크 부착



- 심사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의 서류검토·현지조사를 거쳐 농관원 지원에서 최종 결정하여 쌀 품종명 관리마크 표시업체 지정서 교부



- 쌀 품종명 관리마크 표시 지정업체는 92개소이며, 거의 대부분이 미곡종합처리장¹⁴⁾(RPC ; Rice Processing Complex, 이하 ‘RPC’)임

※ 참여업체 수 : (‘11년) 74 → (‘12년) 82 → (‘13년) 89 → (‘14년) 92

14) 미곡종합처리장(RPC) 사업은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판매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농가 편익증진, 비용절감,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해 '91년부터 시작되었음. RPC를 통해 벼가 일괄 처리됨으로써 건조·수송비용이 34% 절감되고, 브랜드 쌀이 활성화 되었으며, 정부 구매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확기 출하물량을 흡수함으로써 시장안정에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급격한 쌀 소비감소, 높은 원료벼 매입가격, RPC 시설 과잉에 따른 과당경쟁 등으로 RPC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추진중에 있음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원체계 전면개편 방침” 자료에서 요약발췌)

[쌀 품종 관리마크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 | | | | | | | | |
|----|----|----|----|----|----|----|----|----|
| 총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92 | 15 | 8 | 7 | 12 | 19 | 12 | 10 | 9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 내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허위표시 등의 경우 지정취소

※ 사후관리 실적('10년~'14년) : 주의(6), 자진취소(11), 지정취소(0)

□ 지자체의 제도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브랜드(총 404개)를 기준으로 파악 시 절반 정도가 조례에 규정(213개)되어 있고, 아무런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147개)도 상당수

※ '14년 기준 지자체장 품질인증 업체 수는 11,517개 업체(201개 브랜드), '14년 한해 지자체에서 지원은 재정투자는 298억(219개 브랜드)15)

[지자체 품질보증 인증 마크]



15) 농림부(현 농식품부)는 대부분의 농산물 브랜드가 이름표(naming)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5천여개로 양적으로 많지만 ('04년 기준 5,428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가 드물다고 진단하면서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06~'13년까지 총 7조원 규모를 투자기로 하고 지자체와 생산단체들이 지역실정 및 품목별 브랜드 여건에 맞게 자체 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함. (출처 : 농림부 보도자료, “농산물, 글로벌 시대에 브랜드 파워로 개방파고 넘는다”, 2006년도)

III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추진경과

- '15년 6~7월 : 지리적표시제도, 지자체 농특산물 브랜드 등 문헌조사
- '15년 8월 : 예비실태조사
- '15년 9~11월 :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서면 실태조사 및 분석

□ 서면 및 현장 실태조사

- 조사기간 : '15.9.7. ~ 11.6. 기간중
- 조사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특허청/ 광역·기초지자체

□ 문제영역 파악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방법

- 지역의 농수산물 브랜드 관련 제도(지리적표시 관련 제도, 러브미 업무표장, 쌀품종명 관리 마크, 지자체장 품질인증)의 세부 문제영역 파악
 - 중복적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행·재정 낭비, 인증 과정에서 과도한 재량, 법적근거가 없거나 상충되는 인증 운영 등
- 관련법령의 부패유발요인 분석
 - 지역 농수산물 브랜드 지리적표시, 인증 등의 선정, 심사,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수직적 분석
 -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대상 조례에 대한 수평적 분석

| 법령체계 | | 주요내용 |
|------|-----------------------------------|---|
|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 지리적표시 신청, 심사, 사후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등록기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 품질유지 등 사후관리, 제재 등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 | |
| 법령 | 상표법 |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신청, 심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등록기준, 제출서류, 심사관에 의한 심사방법 등 - 거절결정 시 불복심판, 취소심판 청구 등 |
| | 상표법 시행령 | |
| | 상표법 시행규칙 | |
| 자치법규 | 농수산물 품질인증 조례 | · 농수(임)산물 품질인증 신청, 심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신청, 심사, 사후관리, 품질유지 등 |
| 규정 | 상표심사기준, 러브미업무표장관리지침, 쌀 품종명 관리마크표시 | · 러브미 및 쌀 품종명 관리마크 신청, 심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신청, 심사, 사후관리, 품질유지 등 |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지역 브랜드 농수산물 지리적표시 및 품질인증 사업 투명성 제고

| 문 제 점 | 개 선 방 안 |
|-------------------------------------|---|
|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 1.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운영·관리 강화 ①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등록 기준, 제출서류 정비를 통한 인력·재정낭비 감소 및 국민불편 해소 ②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무단 사용 관련 사후관리 강화 |
| 러브^米 및 쌀 품종명 관리 마크 | 2. 러브^米 및 쌀 품종명 관리 마크 운영관리 내실화 ③ 법적근거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선정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④ 쌀 품종명 관리마크 인증사업은 「양곡관리법」 또는 증명표장제도로 운영 |
| 지자체장 품질인증 | 3. 지자체장 품질인증 조례 근거 마련명확화 및 남설 방지 ⑤ 브랜드 남설 방지를 위해 품질인증 관련 심사위원회 기능 개편 ⑥ 무분별한 품질인증제도 운영 방지를 위해 조례로 제정·운영 ⑦ 품질인증 범위 명확화로 자의적 인증 방지 및 농·어가 보호 |
| 지자체장 품질인증 | 4. 지자체장 품질인증 심사 기준절차의 투명성 확보 ⑧ 자의적 심사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 마련 ⑨ 심사위원회 규정 마련 및 위촉·심사 공정성 확보 ⑩ 이의신청 규정 마련 및 불합리한 인증기간 개선 |
| 지자체장 품질인증 | 5. 지자체장 품질인증 사후관리 철저 ⑪ 구체적인 품질관리 규정 마련 등 품질관리를 통한 브랜드 제고 ⑫ 사후관리 규정 마련 및 과도한 부담 유발 사후관리 규정 완화 ⑬ 행정제재 규정 마련 및 과도한 부담 유발 규정 개선 |

1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운영·관리 강화

□ 평가대상 조문

< 지리적표시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④~⑩ (생략)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7.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상표등록출원) ①~③ (생략)

④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특혜발생 가능성(1-3)**

□ **문 제 점**

① **제도 간 중복 요소에 따른 인력·재정 낭비**

-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중복적 요소로 인해 생산자 단체 등에 불필요한 서류 제출 및 연구비용 지출 등 인력·재정 부담
- 제출서류의 경우,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제출 서류가 순서만 바뀌고, 용어가 일부 상이할 뿐 구조와 내용 자체가 유사
- ※ 정관, 생산계획서, 명칭과 품질 및 지리적특성과의 연관성 등을 요구

[지리적표시 vs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출 서류 유사점 비교]

▲ 굵은글씨는 중복·유사한 제출 서류들이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임의적 제출서류는 제외함

| 지리적표시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은 위임사무)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 ※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6항 및 제7항 |
| □ 필수적 제출서류 | □ 필수적 제출서류 |
| - | 가. 출원서 (제36조 제1항) |
| - | 1. 상표견본 1통 |
| - | 2. 상표에 대한 설명서 |
| 1. 정관 ※ 실무상에서 제출서류에 요약서 첨부함 | 3. 정관 또는 규약 및 요약서 |
| 2. 생산계획서 | ※ 임의적 제출서류인 “지리적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현황 등에서 요구됨 |
| - | 나. 증명서류 |
| 3. 대상품목·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칭 또는 그 밖의 특성 |
| 4. 유명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칭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
|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 관계에 관한 설명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3.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 |
| ※ 고시에서 제출토록 하고 있음 | 4.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사실 |
| - | |
| ※ 제출 자료에는 지역대표성 관련 자료 있음 (생산계획서 : 구성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

| | |
|--|---|
| ※ 특허청의 경우 농관원 등 하부조직이 없어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상 규정에 불과 | 5.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출원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 |
| ※ 우측의 내용은 국내 지리적표시와는 무관 | 6.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표시로 보호받고 있는 사실 (외국의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 시) |

※ 지리적표시에서 “()”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규정인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제3조 제1항 1호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임

- 이로인해 양 제도에 중복으로 등록하기 위해 동일 생산자단체 등에 불필요한 연구비용 및 재정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

-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중복 등록한 건에 대해 전수 조사 한 결과, 75개 품목 등록을 위한 연구비로 총 31억*이 투자

* 31억을 재원의 출처별로 보면 국비 9억, 지방비, 18억, 자부담 4억임

※ 신청·출원 과정에서 연구 및 서류(정관, 상품의 품질, 지역적 특성 등) 등 준비과정에서 약 2천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

[중복등록 지리적표시 vs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연구용역 재정투자 현황]

(단위 : 개, 천원)

| 구분 | 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개수 (금액) | 지리적 표시 | | | |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 | | | |
|-----|------------------------------------|-----------|---------|-----------|---------|-------------|---------|---------|---------|
| | | 소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소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75 (3,134,123) | 1,901,091 | 591,388 | 1,000,903 | 308,800 | 1,233,032 | 311,432 | 811,600 | 110,000 |
| 농산물 | 38 (1,583,920) | 1,027,848 | 289,825 | 469,223 | 268,800 | 556,072 | 152,369 | 323,703 | 80,000 |
| 수산물 | 13 (608,300) | 308,600 | 25,000 | 253,600 | 30,000 | 300,000 | 47,000 | 248,000 | 5,000 |
| 임산물 | 24 (941,603) | 564,643 | 276,563 | 278,080 | 10,000 | 376,960 | 112,063 | 239,897 | 25,000 |

※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하나의 연구용역으로 발주한 지자체 5곳은 용역비를 절반씩 임의적으로 입력·처리 (다만, 하나의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용역을 할 경우 6천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 시 분리 용역한 경우와 금액에 있어서 큰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 최근 3년간 중복 등록된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금액은 34억

※ 각 분야별 지원액 : 농산물 25억1천, 수산물 2천7백, 임산물 9억4천

[지리적표시와 지표 중복등록 분야 재정지원(지자체)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합계 | 지리적 표시 (국비 + 지방비) | | |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국비 + 지방비) | | | |
|-----|-----------|-------------------|---------|---------|-----------|-----------------------|---------|--------|--------|
| | | 소계 | '12년 | '13년 | '14년 | 소계 | '12년 | '13년 | '14년 |
| 계 | 3,488,280 | 3,229,678 | 805,399 | 830,433 | 1,593,846 | 258,602 | 103,718 | 63,410 | 91,474 |
| 농산물 | 2,511,554 | 2,297,296 | 405,887 | 576,333 | 1,315,076 | 214,258 | 66,718 | 61,703 | 85,837 |
| 수산물 | 27,000 | 27,000 | 7,000 | 10,000 | 10,000 | - | - | - | - |
| 임산물 | 949,726 | 905,382 | 392,512 | 244,100 | 268,770 | 44,344 | 37,000 | 1,707 | 5,637 |

※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공동으로 재정지원 받은 1곳은 절반씩 입력
 <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 연구용역(신청서류)을 비교·검토한 결과, 거의 대동소이한 연구 내용이고, 일부는 용역 후 출원 시 등록거절로 재정누수 발생

- △△검정쌀에 대한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각 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며 동일기관이 연구용역을 수행

[지리적표시 vs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연구용역(제출서류¹⁶⁾) 비교]

▲ “_” 표시는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내용이 중복되는 곳을 표시한 것임

| 구분 | 지리적표시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
| 제출 내용 | I. 생산계획서 1. 생산계획 2. 법인의 구성 및 지역대표성 II. 품질특성에 관한 설명 1. △△검정쌀 생산현황 2. △△검정쌀의 주요 재배품종 3. △△검정쌀의 품질특성 4. △△검정쌀 생산과정과 특징 III. 유명특산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 △△검정쌀의 역사성 2. △△검정쌀에 대한 인지도 3. 친환경인증 및 수상 4. 홍보활동 IV. 품질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련성 1. 진도군의 지리적 특성 | I.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1. △△검정쌀의 품질특성 2. △△검정쌀 생산과정과 특징 3. △△검정쌀의 명성 (재배역사, 문헌, 인지도 조사, 친환경인증 현황, 수상, 홍보활동) II.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1. 진도군의 지리적 환경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 (지리적 환경과의 관계, 인적요인과의 관계) III.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1. 행정구역 및 면적 2. 위치 3.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표시 |

16) 지자체가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심사서류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연구용역과 심사서류의 큰 차이는 없음. 실제 분석도 심사서류 제출한 자료의 내용 중에 연구용역 분야의 자료를 분석한 것임

| | |
|---|--|
| <p>2. <u>지리적·인적요인과 품질특성간의 관련성</u>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인적요인과의 관계)</p> <p>V. <u>지리적표시등록 대상지역의 범위</u></p> <p>1. <u>지리적표시등록 대상지역 범위</u></p> <p>2. <u>지리적표시등록 대상지역의 면적 및 위치</u></p> <p>3. <u>지리적표시등록 대상지역의 범위 설정 근거</u></p> <p>4. <u>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표시</u></p> <p>VI. <u>자체 품질기준</u></p> <p>1. <u>목적</u></p> <p>2. <u>재배기준</u></p> <p>3. <u>수확 후 관리</u></p> <p>4. <u>품질기준</u></p> <p>5. <u>판매기준</u></p> <p>6. <u>원산지 관리</u></p> <p>VII. <u>품질관리계획서</u></p> <p>1. <u>목적</u></p> <p>2. <u>품질관리계획의 수립</u></p> <p>3. <u>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u></p> <p>4. <u>품질관리 주체</u></p> <p>5. <u>조사항목</u></p> <p>6. <u>조사기준 및 절차</u></p> <p>7. <u>품질조사</u></p> <p>8. <u>조사결과 조치</u></p> <p>9. <u>기타사항</u></p> | <p>IV. <u>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의 자체 관리기준</u></p> <p>1. <u>목적</u></p> <p>2. <u>생산기준</u></p> <p>3. <u>수확 후 관리</u></p> <p>4. <u>품질기준</u></p> <p>5. <u>판매기준</u></p> <p>6. <u>원산지 관리</u></p> <p>V. <u>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의 유지관리 방안</u></p> <p>1. <u>목적</u></p> <p>2. <u>유지관리방안의 수립</u></p> <p>3. <u>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u></p> <p>4. <u>품질관리 주체</u></p> <p>5. <u>조사항목</u></p> <p>6. <u>조사기준 및 절차</u></p> <p>7. <u>품질조사</u></p> <p>8. <u>조사결과 조치</u></p> <p>9. <u>기타사항</u></p> |
|---|--|

- 거의 모든 지자체가 양 제도의 유사상으로 인해 출원(등록)의 편의성 차원에서 동일한 연구기관에 의뢰

- 특히 특정기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와 연구기관과의 유착가능성 소지 다분

※ 이진복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 등록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변리사나 특허법인들의 수입료 잔치를 벌이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비판 (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고흥한우, 가평жат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연구용역 수행기관 현황]

| 지자체명 | 등록품목 | 연구용역 수행기관 | |
|------|-------|-----------|------------|
| | | 지리적표시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 △△시 | 거제맹종죽 | A 기관 | A 기관 |
| ○○시 | 삼척마늘 | B 기관 | B 기관 |
| ◎◎시 | 상주곶감 | B 기관 | B 기관 |
| ◇◇시 | 영주사과 | B 기관 | B 기관 |
| ●●시 | 영천포도 | B 기관 | B 기관 |
| ◆◆시 | 천안호두 | B 기관 | B 기관 |

| | | | |
|-----|---------|------|------|
| ▣▣군 | 고흥석류 | E 기관 | - |
| | 고흥한우 | F 기관 | E 기관 |
| ●●군 | 구례산수유 | C 기관 | C 기관 |
| ●●군 | 가평잣 | B 기관 | J 기관 |
| ▣▣군 | 금산갯잎 | A 기관 | A 기관 |
| ▣▣군 | 기장미역 | G 기관 | G 기관 |
| | 기장다시마 | G 기관 | G 기관 |
| ▣▣군 | 한산모시 | D 기관 | D 기관 |
| ▣▣군 | 영광찰쌀보리쌀 | B 기관 | B 기관 |
| ▣▣군 | 영동곶감 | C 기관 | C 기관 |
| ▣▣군 | 영월곤드래 | B 기관 | B 기관 |
| ▣▣군 | 서생간절곶배 | H 기관 | H 기관 |
| ○○군 | 의성마늘 | B 기관 | B 기관 |
| ♠♠군 | 진도대파 | B 기관 | B 기관 |
| | 진도검정쌀 | B 기관 | B 기관 |
| | 진도울금 | B 기관 | B 기관 |
| ♠♠군 | 청도반시 | B 기관 | B 기관 |
| | 청도한재미나리 | B 기관 | B 기관 |
| ♣♣군 | 함안수박 | B 기관 | B 기관 |
| ♣♣군 | 함평천지한우 | I 기관 | I 기관 |
| ▲▲군 | 해남김 | B 기관 | B 기관 |
| | 해남전복 | B 기관 | B 기관 |

<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 특허청의 경우, 그간 '지리적표시 권리화 지원사업' 명목으로 수요조사 후 연구비를 지원한 후 등록거절 사례가 있어 신중한 예비조사 필요

※ ▣▣불고기의 경우 해당 지역 특유의 지리적환경에 기인했다는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 (●●불고기의 경우는 ●●의 지리적 환경과 ●●불고기라는 상품의 품질, 명성이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10.11.25. 등록)

[특허청 수요조사 및 재정지원 후 거절결정 사례]

(단위 : 천원)

| 지자체명 | 품목 | 금액 | | 거절결정 사유 |
|--------|----------|--------|--------|-------------------------|
| | | 특허청 | 지자체 | |
| 광주 △△구 | △△ | 26,750 | 26,750 | 회원정관 미비 |
| 부산 ○○구 | ○○어묵 | 12,500 | 7,500 | 지리적환경이 어묵의 품질과 상관관계가 없음 |
| 경남 ▣▣군 | ○○○ ▣▣곶감 | 29,670 | - | 농협은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법인이 아님 |
| 강원 ▣▣군 | ▣▣떡 | 12,500 | 12,500 | 지리적 환경과 본질적 연관성 없음 |
| 경북 ▣▣군 | ▣▣불고기 | 12,500 | 12,500 | 조리방법이 상이한 특이점이 없음 |
| 경북 ▣▣군 | ▣▣단감 | 2,500 | - | 상품의 특성, 인지도, 품질관리 기준 미흡 |
| 경북 ▣▣군 | ▣▣사과 | 15,000 | 15,000 | 품관법의 지리적표시등록 품목과 유사 |

<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 중복등록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공통적 요소가 있는 등록기준, 제출서류는 정비를 통해 인력·재정 낭비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등록기준·제출서류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5%(47명)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담당 공무원(지자체) 대상 설문조사]

| 구분 | 등록기준, 제출서류의 정비 필요성 | |
|-------|--------------------|-------|
| | 필요하다 | 필요없다 |
| 필요여부 | 필요하다 | 필요없다 |
| 비율(%) | 85.5% | 14.5% |
| 합계 | 47 | 8 |
| 농산물 | 25 | 5 |
| 수산물 | 4 | 1 |
| 임산물 | 18 | 2 |

<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

□ 개선방안

①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등록기준, 제출서류 정비를 통한 인력·재정 낭비 감소 및 국민불편 해소

- 양 제도의 신청 대상, 효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되, 불필요한 재정낭비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통적 요소를 가진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정비 (심사는 각기 별개의 심사 체계 유지)

※ 법 체계를 고려하여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안을 제시 (다만, 추후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관련법 및 시행령 등 구체적 개정 방향 도출 필요)

□ 참고의견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나목의 수산물 정의에서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는 규정 삭제 필요
 - ※ 소금을 기존에 광물로 취급하던 것을 식품으로 규정(수산업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함에 따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지리적표시 대상에 소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 또한 「소금산업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또한 삭제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20조의 지리적표시 관련 조항 삭제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조항이 있으므로, 지리적표시 정의 규정 삽입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준용 조항은 불필요. 굳이 규정을 존치할 경우에는 구체적 준용조항을 명시

< 예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상표법」 >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p> <p>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③ (생략)</p> <p><신 설></p> | <p>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③ (좌동)</p> <p>④ 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상표법」 제0항에 따른 등록기준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성·품질 그리고 그 밖의 특성이 있을 것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가 있을 것 3.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 4. 지리적표시의 신청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및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출 것 |
| <p>□ 상표법</p> <p><신 설></p> | <p>제7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0항에 따른 등록기준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있을 것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가 있을 것 3.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 4. 지리적표시의 신청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및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출 것 |

※ 「상표법 시행령」 제1조의2(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및 제1조의3(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서 등록 관련 사항 기술

□ 평가대상 조문

< 지리적표시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 ②~③ (생략)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문 제 점

② 지역 내 생산자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무단사용 빈번 등 사후관리 소홀

- 정부 주도의 지역 내 향토자원에 대한 브랜딩 및 권리보호를 위한 생산자 단체 등의 등록 이후 해당 기관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상황
 - ※ 사후관리 소홀 시 제3자의 심판청구에 의한 등록 취소가 가능하며,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2천만원) 등을 부과하며 권리침해 시 금지 및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 가능
 - ※ 지리적표시의 경우 표시사항 위반 등으로 직권취소 된 경우는 없으며 ‘생산 곤란’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는 3건(△△마늘, □□고구마, ○○포)이 있음¹⁷⁾
- 등록 농·어가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 지리적표시 마크, 등록번호·표장(로고)을 같은 지역 내에서 무단 사용하는 곳이 3분의 1로 제도의 운영 취지 무색¹⁸⁾

17) 지리적표시 단체표장(특허청)의 경우 표시사항 위반과 관련한 직권취소 제도는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해결

18) 지역 공동체가 오랫동안 명성, 품질 등을 유지해온 상품에 대한 지역민의 공유자원이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한 법인 또는 단체를 구성한 후 정관을 통해 신규 농가에 대한 차별적 가입 규정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지리적표시의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음

- 지리적표시의 경우 약 60%(28개 브랜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경우 40%(22개 브랜드)가 정관에서 정한 가입절차 없이 무단 사용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받은 △△연(등록번호 제44-000000호)의 경우 정관에 가입절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따른 승인절차 없이 사용 중이며, 등록품목(제31류 ; 연잎, 연근)을 벗어나 공산품에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

[브랜드별 사용범위]

▲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중복으로 등록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단위 : 개)

| 구분 | 지리적표시 사용범위 |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로고) 사용범위 | |
|-----|------------|-----------------------|---------------------|----------------------|
| | 등록농가만 사용 | 지역 내 생산농가 (생산자) 모두 사용 | 등록농가만 사용 | 지역내 생산농가 (생산자) 모두 사용 |
| 계 | 47 | 28(37.3%) | 53 | 22(29.3%) |
| 농산물 | 21 | 17 | 21 | 17 |
| 수산물 | 12 | 1 | 13 | 0 |
| 임산물 | 14 | 10 | 19 | 5 |

<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 특히 그동안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향토자원 발굴, 지역 브랜드 개발 등의 차원에서 확대해 왔으나,
 - 품질 제고를 위한 법인(단체)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생산·관리·유통 차원에서의 모니터링과 행정기관의 사후관리는 미흡한 실정

□ 개선방안

②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무단 사용 관련 사후관리 강화

- 등록 후 법인이 자체품질 관리를 강화토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미흡 시 표시 정지 등 제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 ※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문조사('13년, 439명 대상)에 따르면 지리적표시 임산물의 활성화 방안으로 “생산자(단체)가 품질 관리에 대한 철저한 노력(44.2%)”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번호 및 로고(지리적명칭 사용은 무관함) 무단 사용 방지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운영규정 개정)

< 예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상표법」 >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p style="text-align: center;">< 무단사용 방지 ></p> <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p> <p>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 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 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시할 수 있다.</p> <p>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p> <p><신 설></p> <p>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 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p> <p>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 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p> | <p>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좌동)</p> <p>1. (좌동)</p> <p>2. <u>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u></p> <p>3. (좌동)</p> <p>4. (좌동)</p> |

2

러브미(米) 및 쌀 품종명 관리 마크 운영·관리 내실화

□ 평가대상 조문

□ Love 米 업무표장 관리지침

제1조(목적) ① 이 훈령은 Love 米 업무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용기간 등) Love 米 업무표장의 사용기간 등은 별표1과 같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문 제 점

③ 러브미 브랜드 법적근거, 선정기준·절차 등 투명성 제고 필요

- 증명표장¹⁹⁾ 제도가 한·미 FTA에 따라 「상표법」(12.3.15.)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표장제도로 등록 및 갱신·사용

※ 러브미 업무표장은 기간 만료(14.8.4.)에 따라 특허청에 갱신을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10년간(24.9.6.) 사용 가능토록 한 상태임

- 과도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비용에 비해 운영성과가 미흡한 편이고, 증명표장이나 「양곡관리법」이 아닌 잘못된 업무표장²⁰⁾ 제도로 운영

※ 농림부가 최우수 쌀 브랜드를 선정해 ‘Love 米’ 로고를 부여하겠다고며 축산기금 65억까지 전용해가며 2002년 시작, 광고비로만 65억원을 사용하는 등 100억원 가량이 투입(국민일보, '04.8.12.)

※ 정부의 우수브랜드 정책에 의한 ‘러브미’ 브랜드가 대형마트에서 가격 프리미엄을 거의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농민신문, '09.11.16.)

19)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에 대하여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함. 증명표장 제도는 상표의 품질보호 기능의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서,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올바른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및 거래자의 최선의 선택과 소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수요자에게 그 상품 또는 서비스가 어떤 특성을 구비하고 있거나 증명표장권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20) 업무표장이란 한국소비자원, 대한변호사협회,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가 그 비영리업무에 대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음(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은 증명표장도 설정 불가)

- 또한 인증의 사용기준·절차 등도 '평가 2년연속 우수 브랜드'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승인하는 모호한 규정으로 구성

[러브미 업무표장의 사용기준 및 사용기간]

| 사용범위 | 사용기준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 1. 쌀 소비 촉진 캠페인 광고 및 홍보 행사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 | 행사기간 | 홍보물 등에 표시 |
| 2. 우수 브랜드 쌀 및 관련제품 인증 | 평가 2년연속 우수 브랜드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 | 2년 *기간은 평가 익년 1월1일부터 적용 | 포장 전면에 표시 - 관련 브랜드 홍보· 광고 등에 표시가능 |
| 3. 쌀 가공식품 개발 및 연구 업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 | - | 홍보물 등에 표시 |
| 4.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 | - | - |

- 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러브미 인증 마크를 위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중지, 취소 사례는 한건도 없었음

[러브미 사용기간이 지난 쌀 표시 위반 사례]



□ 개선방안

③ 법적근거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선정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 법적근거도 없고, 「상표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러브미 업무표장은 증명표장으로 운영하거나 「양곡관리법」에 인증의 형태로 운영
 - ※ 업무표장으로 계속 사용할 시에는 농식품부의 쌀 촉진 홍보용으로 한정하여 사용
- 또한 선정기준·절차를 구체화 하고, 인증기간이 지난 브랜드, 잘못 사용되고 있는 표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평가대상 조문

□ 쌀 품종명 관리마크 표시업체 지정·운영 지침 (농관원 자체 내부지침)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문제점

④ 법률에 근거 없는 쌀품종명 관리마크 인증제 운영

○ 농관원에서 자체적으로 쌀 품종명 관리마크를 운영중이나 법률근거 없이²¹⁾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사후관리도 미흡

- 지정취소가 12건이 있으나 1건(「양곡관리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진취소이며 중지·취소 사례는 없음

※ 쌀 브랜드 홍수...품질인증은 고작 13% (국민일보, '06.10.10.)

[쌀 품종명 관리마크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내역('10~14년)]

| 처분일자 | 업체명 | 처분내용 | 처분내용 사유 |
|------------|----------|------|---------------------------|
| '14.07.07. | ○○농협 RPC | 지정취소 | 양곡관리법 위반(벌금형) |
| '14.07.01. | ○○농협 RPC | 지정취소 | 업체 내부사정으로 자진취소 |
| '14.04.29. | ○○농산 RPC | 지정취소 | 업체 내부사정으로 자진취소 |
| '14.02.09. | ○○농산 RPC | 지정취소 | 자진취소(품종순도 관리상의 어려움) |
| '14.11.04. | ○○농협 RPC | 지정취소 | 자진취소(품종순도 관리상의 어려움) |
| '14.08.13. | ○○농협 RPC | 지정취소 | 자진취소(품종순도 관리상의 어려움) |
| '12.04.09. | ○○농협 RPC | 지정취소 | 원료비 미확보에 따른 자진 취소 |
| '12.04.16. | ○○농협 RPC | 지정취소 | 계약품종 확보차질로 순도관리 어려워 자진 취소 |
| '12.02.01 | ○○농협 RPC | 지정취소 | 원료비 미확보에 따른 자진 취소 |
| '11.09.02. | ○○식품 | 지정취소 | 원료비 미확보에 따른 자진 취소 |
| '11.03.24. | ○○농협 RPC | 지정취소 | RPC통합으로 인한 자진취소 |
| '10.12.08. | ○○농협 RPC | 지정취소 | 관리의 어려움과 비용상승으로 자진취소 |

< '15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21) 농식품부에서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법률적 근거를 둔다고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쌀 품종의 경우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고, 품종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혼합”으로 표시하는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지역 쌀 브랜드에 대한 품질 인증적 성격의 쌀 품종명 관리마크 부여와는 내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농식품부의 자체 지침인 「쌀 품종명 관리마크 표시업체 지정·운영 지침」에도 법률적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④ 쌀 품종명 관리 마크 인증사업은 「양곡관리법」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운영

- 법적근거가 없이 단지 내부지침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쌀 품종명 관리 마크는 인증과 유사한 기준·절차 등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거나 증명표장으로 운영

□ 평가대상 조문

○ 조례가 없는 경우

[지역 농수산물 품질인증 브랜드 별 규정 현황]

| 운영 현황 | 브랜드 수(개) |
|-----------|----------|
| 아무런 규정 없음 | 147 |
| 자체지침으로 운영 | 43 |
| 규칙으로 운영 | 1 |

※ 총 404개 브랜드 중에서 조례(조례, 조례+규칙, 조례+훈령)로 운영 중인 브랜드는 213개(52.7%)

○ 조례가 있는 경우

제0조 (농수특산품품질관리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농수특산품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00시농수특산품품질관리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품질보증 농수특산물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2. 품질보증 품목의 표준규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품질보증품 표시에 관한 사항
4. 농수특산물 품질관리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 문 제 점

수 무분별한 브랜드 개발로 재정낭비 초래 및 브랜드 가치 약화

- 지방자치제도 도입, FTA 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유통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역 생산자단체 등에서 브랜드 개발 붐

※ 2000년 초반부터 지역 특산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 이루어 지고, 2000년 중반 이후에는 ‘농산물 브랜드 열풍’으로까지 묘사될 정도로 브랜드 급격히 증가²²⁾

- 그러나 그 이후 경영체의 영세성, 특허청의 갱신기간(10년) 경과, 브랜드의 낮은 인지도·미사용 등으로 브랜드는 감소 추세

※ 생산자와 마을, 작목반마다 브랜드를 달리해 많게는 1개 품목에서 100여개의 상표로 유통되는 등 농특산물 브랜드 난립 역효과 (매일신문, '04.10.7.)

※ 브랜드 변화 추세 : ('06년) 6,552개 → ('11년 7월) 5,291개 → ('15년 9월) 4,478개

[지역 법인·생산자단체 등의 브랜드 (공동²³/개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 '06년 | | | '11년 7월 | | | '15년 9월 | | |
|-----|-------|-------|--------------|---------|-------|--------------|---------|-------|--------------|
| | 공동 | 개별 | 계 | 공동 | 개별 | 계 | 공동 | 개별 | 계 |
| 계 | 1,473 | 5,115 | 6,552 | 737 | 4,554 | 5,291 | 781 | 3,697 | 4,478 |
| 등록 | 902 | 1,508 | 2,410 | 612 | 1,380 | 1,992 | 608 | 1,424 | 2,032 |
| 미등록 | 535 | 3,607 | 4,142 | 125 | 3,174 | 3,299 | 173 | 2,273 | 2,446 |

< 자료 : '06년과 '11년은 농림축산식품부/ '15년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자료 >

○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농수산물 브랜드를 개발 하였으나, 방치·미사용, 개발 후 꾸준한 관리 미흡,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치적성 브랜드 개발 등 재정 낭비

- 조례·지침 등 근거 없이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147개(전체 브랜드는 404개) 브랜드 중에서 현재 미사용 브랜드는 33개

※ 춘천 농산물 브랜드 '수아르'의 경우 7년간 20억을 투자 했으나, 효과가 미미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기존의 '소양강' 브랜드는 이미지 하락 (강원미래신문, '14.9.24.)

※ 지자체가 직접 또는 위탁으로 운영 중인 쇼핑물 69개중 연 매출이 천만원도 되지 않는 쇼핑물이 15개에 달함 (함평신문, '10.6.23.)

- 인증업체 수는 1개 브랜드 당 최소 1개*에서 많게는 5,643개 업체(☐☐☐재첩)로 브랜드가 관리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

* 사례를 보면 ●●인삼의 경우 △△주식회사에 인증을 해준 후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지자체장 품질보증 마크를 사용토록 하거나, 1개의 브랜드에 1개의 업체만 인증해준 경우 등임

22) 지역차원에서 브랜드가 급격히 확산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식품부, 특허청 등의 관심과 지원 또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농식품부는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하고, 특허청은 브랜드 권리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육성정책에 기인한 바도 크다고 할 수 있음

23) 공동브랜드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생산농가단체 등이 브랜드를 공동으로 개발·사용하는 브랜드로 햇사래, 굿뜨래, 안성맞춤 등임

[지자체 브랜드 개발 현황]

- 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한 브랜드만 놓고 살펴보면, **최초 브랜드 개발비는 79억**(252개 브랜드)이 소요되었고, **최근 6년간 홍보비는 658억**(148개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구축비는 15억**(32개 브랜드)이 투자
 - ※ 홍보비는 1개 브랜드 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7억으로 편차 극심
 - ※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매출액도 브랜드에 따라 적게는 14백만원에서 많게는 1,857억(제주 해올렛)으로 매출액 수준 차이가 큼
- '14년 기준 지자체장 품질인증 업체 수는 11,517개 업체(201개 브랜드), '14년 한해 재정지원은 298억(219개 브랜드)에 이룸
 - ※ 인증업체수는 1개 브랜드 당 최소 1개에서 많게는 5,643개 업체(目目 ◎◎◎재첩)로 인증 업체 숫자에서도 편차가 아주 심한 수준임

[개발비, 홍보비, 매출액 등 현황²⁴⁾]

※ 개발비, 홍보비를 제외한 세부내역은 '14년 기준임

(단위 : 개, 백만원)

| 브랜드(개) (응답 수 기준) | 브랜드별 세부 내역 | 금액 (백만원) | 비고 (최소에서 최대금액) |
|---------------------|---|-------------------|--|
| 252 | 개발비 ※ '14년이 아닌 지자체의 최초 브랜드 개발금액임 | 7,992 | · 0.2~1,200 |
| 148 | 홍보비 (6년간) ※ '09년~'04년 기간 | 65,867 | · 0.2~3,724 |
| 32 | 온라인 쇼핑몰 개발금액/ 매출액 ※ 쇼핑몰 개발금액은 최초 개발금액임 | 1,515/ 305,679 | · 개발금액 : 0.6~268 · 매출액 : 14~185,708 |
| 201 | 인증업체 수 | 11,517 | · 1~5,643개 업체 |
| 219 | 재정지원 | 29,850 | · 국비 : 1,979, 시비 : 6,781, 군구비 : 21,070, 기타 : 20 |

< 자료 :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 개선방안

수 브랜드 남설 방지를 위해 품질인증 관련 심사위원회 기능 개편

- 잦은 브랜드 변경은 인력·재정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브랜드 이해 미흡에 따른 농·어가 매출 감소 등 불이익을 초래
 - * 브랜드 개발 관련 연구용역, 브랜드 출원 및 등록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후 마케팅 비용, 브랜드 교체에 따른 농·어가 박스교체비용 등
- 따라서 지역 내에서 농수특산품에 대한 신규 브랜드 개발, 기존 브랜드 교체 또는 변경 시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

24) 브랜드별 개발비 등 현황에서 브랜드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지자체 특성에 따라 브랜드에 대한 개발, 재정지원, 홍보 등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임. 하나의 예로 최초 개발 후 브랜드를 미사용 하거나 브랜드별로 재정지원 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거나 무응답한 부분도 있어 브랜드 수지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발생한 것임

< 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 >

- ※ 지자체에 따라 조례명은 각기 다양하며, 예시에서는 상표로 등록시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시
- 농수특산물 품질관리 조례,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농산물 공동 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00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등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p style="text-align: center;">< 지자체장 자체 품질보증일 경우 예시 ></p> <p>제0조 (농수특산품품질관리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농수특산품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00시농수특산품품질관리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보증 농수특산물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2. 품질보증 품목의 표준규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품질보증품 표시에 관한 사항 4. 농수특산물 품질관리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p><신 설></p> <p>5. 그 밖에 시장이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0조 (농수특산품품질관리심사위원회 설치)</p> <p>① 농수특산품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00시농수특산품품질관리심사위원회를 둔다</p> <p><좌 동></p> <p>1.~4. <좌 동></p> <p>5. 농수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6. <좌 동></p> |

□ 평가대상 조문

○ 조례가 없는 경우

[지역 농수산물 품질인증 브랜드 별 규정 현황]

| 운영 현황 | 브랜드 수(개) |
|-----------|----------|
| 아무런 규정 없음 | 147 |
| 자체지침으로 운영 | 43 |
| 규칙으로 운영 | 1 |

※ 총 404개 브랜드 중에서 조례(조례, 조례+규칙, 조례+훈령)로 운영 중인 브랜드는 213개(52.7%)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 문제점

⑥ 조례에 근거 없이 자체적 운영으로 농수산물 품질인증 남발

- 총 404개 브랜드 중에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가 약 절반(213개)이며, 규정 없이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147개)가 상당수이며, 그 다음으로 자체지침으로 운영(43개) 순임

[브랜드별 운영 현황]

(단위 : 개)

| 브랜드(총계) ²⁵⁾ | 조례 (213) | | | 규칙 | 자체지침 | 내부규정 없음 |
|------------------------|----------|-------|-------|----|------|---------|
| | 조례 | 조례+규칙 | 조례+훈령 | | | |
| 404 | 68 | 144 | 1 | 1 | 43 | 147 |

< 자료 :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 조례가 아닌 내부지침 등으로 운영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부적절하며 브랜드 폐기·교체 등 재정낭비 초래 우려

※ 확실한 목적과 활용방안, 관리방안이 없는 브랜드 개발로 인해 예산 낭비로 귀결되는 경쟁적 지역 브랜드 (금강일보, '13.3.4.)

※ 설 자리를 잃어가는 농산물 산지 브랜드 (농민신문, '09.7.15.), 브랜드 홍보비 민간사업자 부담 (동아일보, '06.5.1.)

25) 브랜드를 기준으로 통계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일부 특정 지자체가 1개의 조례로 여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되는 브랜드 전체 수로 표시

□ 개선방안

⑥ 무분별한 품질인증제도 운영 방지를 위해 조례로 제정·운영

○ 기존에 개발한 브랜드는 조례로 포섭하여 운영토록 개선

- 브랜드를 개발 후 조례로 제정하지 않거나 기존 농특산물 조례에 포섭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미사용 등 재정낭비로 귀결될 위험

※ ▣▣군의 경우 '14년도에 상표 갱신 비용으로 29,792천원(대리인 비용 4,286천원, 특허청 관납료 25,506천원)이 소요

○ 신규 개발 브랜드의 경우에는 개발 후 조례로 규정·운영

- 상표나 인증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거나 주민들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인 바, 조례로 운영토록 하여 내실 있는 브랜드 운영 제고

< 전문가 자문 결과 >

- 지자체에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생긴 상표권자로서 권한에 속하는 범위에서만 조례나 규칙 등의 자치법규에서 규정 가능하며, 조례 규정 시 상표권자로서의 권한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상표와 관계없이 농산물, 그 가공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과 동일하지 않다면 조례 가능
 - ※ 지자체는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에 중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해당
- 지자체가 상표등록 후 상표에 관한 사항이나 자체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고, 조례 외에 규칙, 훈령, 내부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음
 - ※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행정기관의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범인 바, 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아님 (「지방자치법」 제23조와 맞지 않음)

□ 평가대상 조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00지사인증농특산물"이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 "도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이라 한다) 및 도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임을 도지사가 인증한 것을 말하며, 다만, 가공식품·전통 식품의 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으로 대체 할 수 있다.
2. "통합상표"란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의 심볼마크(상표를 말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 문 제 점

⑦ 상위법과 배치된 자의적 조례규정에 따른 지자체장 품질인증 부여

- 지자체 조례와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대부분(상위법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 후 조례로 규정²⁶⁾하거나, 그 외 농수산 관련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이며, 별도 상위법 규정 없이 운영하는 조례도 있음

-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상위법과 배치되거나, 상표등록 없이 조례로 상표사용권을 허가토록 하는 조례가 있어 개선 필요

- 특히 상표등록 없이 조례로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품질보증 인증을 하더라도 동일한 로고 등을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한 대항권이 없어 농·어가의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 상존

26) 지자체의 상표사용권은 상표권을 가진 지자체장과 통상사용권자와의 계약관계라 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됨(「상표법」 제57조)

※ △△도의 경우 시행규칙 「△△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품목을 농수산물 및 전통식품으로 규정하고, 실제로는 가공식품인 막걸리에 대해서도 인증마크 부여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잘못된 조례 운영 사례]

| 잘못된 규정 (예시) | 조례명 (예시 차원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로 상위법을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장이 마치 통합상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인증 후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라고 규정한 경우 ※ △△도지사가 마치 통합상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규정 | △△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자체의 농수특산물에 대해 상표로 등록한 바가 없으면서 조례에서 「상표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해주는 조례 | ○○광역시 ○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등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상표등록 범위를 벗어나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경우 ※ 농산물 위주로 상표를 등록하였지만, 조례에서는 농산물·가공품·서비스까지 규정하는 경우 등 | □□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 육류, 식용작물류, 과일류 등록 (조례는 가공품까지 규정) |

□ 개선방안

⑦ 품질인증 범위 명확화로 자의적 인증 방지 및 농·어가 보호

- 조례 규정 시 상표등록에 따른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설정
 - ※ 가급적 「상표법」 상의 ‘상표’로 등록 후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해당 지역의 농·어가의 생산품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²⁷⁾
- 또한 품질인증의 범위(농산물·수산물·가공품 등)를 구체화 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의 생산·제조·가공 등 여부를 제시

27) 해당 지역의 특산품이 오랜 동안 축적된 지리적 명성과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상표법」 제2조제1항 4의2)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지리적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함

< 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 >

- ※ 지자체에 따라 조례명은 각기 다양하며, 예시에서는 상표로 등록시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시
- 농수특산물 품질관리 조례,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농산물 공동 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00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등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00지사인증농특산물"이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 "도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이라 한다) 및 도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임을 도지사가 인증한 것을 말하며, 다만, 가공식품·전통식품의 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으로 대체 할 수 있다.</p> <p>2. "통합상표"란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의 심볼마크(상표를 말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p> | <p>제0조(정의) ① 좌 동</p> <p>1. 00지사가 품질을 인증한 "농수특산품"이란 00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산물 포함),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으로써 00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한 농수특산품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농산물, 수산물에 한정하는 것인지, 축산물, 임산물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구체화</p> <p>2. "상표"라 함은 00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p> |

□ 평가대상 조문

- 조례로 운영하나 조례에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 농수산물 품질인증 브랜드 현황]

| 운영 현황 | 브랜드 수(개) |
|-------------|----------|
| 심사기준 규정 부재 | 121 |
| 심사위원회 규정 부재 | 24 |

※ 전체 브랜드 404개 중 조례로 운영 중인 213개 브랜드를 분석

- 조례가 있는 경우

제0조(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신청기일·신청절차와 방법·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00이 따로 정한다.

< 유사조례 >

제0조 (품질인증기준) 품질인증 농수특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인증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조 (지정신청) ① (생략)

② 시장은 지정신청 품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특혜발생 가능성(1-3)

□ 문제점

⑧ 심사기준이 없거나 지자체장이 결정토록 하는 등 자의적 심사

- 심사기준은 지자체의 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농수산물 인증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 조례에 심사기준과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거나, 규칙에 위임한다는 조항도 없으며,

※ 브랜드(총 404개)별로 분석할 경우, 조례에 심사기준이 없는 브랜드는 121개

- 심사기준도 없이 지자체장이 결정토록 하는 등 자의적 운영으로 부패발생요인 내재

※ 「[시]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심사기준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서류 심사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심의토록 하고 있음

권익위 설문조사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15년 9월)한 결과, 인증, 표시 등을 받기 위해 농어민이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이 아주 크거나 보통이라는 응답이 절반(50.4%)을 넘어섬

(단위 : 명)

| 설문응답 수 | 아주크다 | 보통이다 (있다) | 조금있다 | 거의없다 | 무응답 |
|---------------|-----------------|-----------------|-----------------|-----------------|--------------|
| 931 (100%) | 144 (15.46%) | 325 (34.90%) | 285 (30.61%) | 176 (18.90%) | 1 (0.13%) |

- 또한 지정기준절차, 심사기준절차,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에서 미흡하거나 아주 미흡하다는 응답이 33.7%를 차지

(단위 : 명)

| 설문응답 수 | 그렇다 | 보통이다 | 미흡하다 | 아주미흡하다 | 무응답 |
|---------------|-----------------|-----------------|-----------------|---------------|--------------|
| 931 (100%) | 196 (21.05%) | 409 (43.93%) | 268 (28.78%) | 46 (4.94%) | 12 (1.3%) |

< 자료 :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

□ 개선방안

⑧ 자의적 심사 방지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

- 심사기준은 인증을 받기위한 주요 기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여 부패 소지 차단

권익위 설문조사

-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5년 9월)한 결과, 조례의 인증기준 및 절차, 심사기준 및 절차, 품질관리, 사후관리 면에서 미흡(129명)하거나 아주 미흡(20명)하다는 응답은 3명중 1명꼴(총 474명 중 149명으로 31.4%)이었음

(단위 : 명)

| 설문응답 수 | 그렇다 | 보통이다 | 미흡하다 | 아주 미흡하다 | 무응답 |
|---------------|----------------|-----------------|-----------------|---------------|---------------|
| 474 (100%) | 65 (13.71%) | 239 (50.42%) | 129 (27.22%) | 20 (4.22%) | 21 (4.43%) |

< 자료 :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

< 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 >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p>< 심사기준 예시 ></p> <p>제0조 (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브 랜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 <p>제0조 (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 ① (생략)</p> <p><u>② 00는 제0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u></p> <p><u>③ 위원회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 지조사 등을 거쳐 품질인증 기준에 의한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u></p> <p><u>④ 제0의 규정에 의한 상표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기준·절차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 평가대상 조문

- 조례로 운영하나 조례에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 농수산물 품질인증 브랜드 현황]

| 운영 현황 | 브랜드 수(개) |
|-------------|----------|
| 심사기준 규정 부재 | 121 |
| 심사위원회 규정 부재 | 24 |

※ 전체 브랜드 404개 중 조례로 운영 중인 213개 브랜드를 분석

- 조례가 있는 경우

제0조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한다.
- ④ 당연직위원은 농협중앙회00시지부장, 농협APC운영위원장,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농산물생산농가대표,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이해충돌 가능성(3-3)

□ 문제점

⑨ 심사위원회 규정 부재 및 위촉·심사 절차의 공정성 미흡

- 심사위원회는 해당 지역 농·어가가 신청하는 농수산물특산물에 대한 명성·품질의 우수성·품질관리 능력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
 - 그러나 심사위원회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백지위임을 하거나, 형식적 위촉기준과 절차만 있는 경우 등 부패발생 가능성 내재
 - 특히 민간위원 구성에서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내부 심사위원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해촉 규정이 없는 경우 등은 개선 필요

[잘못된 조례 운영 사례]

| 잘못된 규정 (예시) | 조례명 (예시 차원임) |
|---|--|
| ·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 | △△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
| · 위촉직을 지자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위촉 | ☒☒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조례 |
| · 위원회 구성은 하되, 타 심의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경우 ※ 품질상표위원회를 두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 | ☒☒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
| ·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한 경우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모호한 규정 | ☒☒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조례 |
| · 내부 심사위원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업진흥과장, 위원은 군의원·기획실장·재무과장 등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 | ⓪⓪ 복분자 상표관리 조례 |
| · 해촉 규정이 없는 경우 | 모든 조례 |

-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제척·기피)하거나, 이해관계 있는 위원이 회피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 부재

※ 지자체 농수산 특산물 인증업체는 제품 홍보활동 경비 지원, 포장지 및 박스 지원, 전시판매 및 직판장 우선 참가 등 혜택 부여

[조례로 운영하는 브랜드(213개) 중에서 이해충돌 방지장치 규정 여부]

(단위 : 개)

| 구 분 | 제척·기피·회피 규정 부재 | 위원자격조건 규정 부재 | 위원임기 규정 부재 | 위원 해촉 규정 부재 |
|-------|----------------|--------------|--------------|--------------|
| 브랜드 수 | 208 (213) | 86 (213) | 40 (213) | 108 (213) |
| 비율 | 97.7% (100%) | 40.4% (100%) | 18.8% (100%) | 50.7% (100%) |

< 자료 :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 개선방안

⑨ 심사위원회 규정 마련 및 위촉·심사 공정성 확보

- 자의적 심사 방지를 위해 심사위원회 규정 마련 및 위촉기준·절차 정비
- 위원회 위원의 사적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및 문제 야기 시 해촉한다는 규정을 두어 부패 차단

< 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 >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p align="center">< 심사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예시 ></p> <p>제0조 (심의위원회) ① 상표 사용권 부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한다.</p> <p>④ 당연직위원은 농협중앙회 00시 지부장, 농협APC 운영위원장,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농산물 생산농가 대표,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 <p>제0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0조에 따른 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 내 농수특산물의 생산·제조·가공·유통·소비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임업·수산분야 생산자 대표 2. 소비자 단체 대표 3. 농업·임업·수산 분야 전공 대학교수 4. 농업·임업·수산 분야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5급)이상 공무원 <p>④ 그 외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 <p><신 설></p> | <p>제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0조제0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0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p><신 설></p> | <p>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p> <p>제0조(위원의 해촉) 시장(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 평가대상 조문

제0조 (사용기간) 인증상표의 유효기간과 관련한 사항은 00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조례 없음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접근성과 공개성(3-1)

□ 문제점

10 이의신청 규정이 부재하고 인증기간의 편차가 심한 상황

- 심사결과를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이의신청 절차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미흡
 - ※ 모든 조례가 품질인증을 신청한 신청자에게만 통보 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인증 사용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실질적으로 영구 사용토록 되어 있는 등 형평성 차이가 큰 편
 - 과도한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1년 단위로 규정해 놓아 매년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력·재정적 부담이 큰 편
 - 과소한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없거나, 특별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거나, 유효기간 조정 등 다양
 - ※ 연장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연장, 유효기간 조정, 지자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규칙에 따라 연장 등 다양

[조례로 운영하는 브랜드(213개)중에서 인증 사용기간 관련 운영 현황]

(단위 : 개)

| 구 분 | 인증 사용기간 규정 부재 | 사용기간 연장 규정 부재 | 인증 연장 조건 규정 부재 |
|-------|------------------|------------------|-------------------|
| 브랜드 수 | 25 (213) | 37 (213) | 59 (213) |
| 비율 | 11.7% (100%) | 17.4% (100%) | 27.7% (100%) |

※ 조례로 운영하는 브랜드(213개)를 각 구분별로 놓고 보면 인증 사용기간이 없는 경우가 213개 중 25개 (11.7%), 사용기간 연장 규정이 부재한 경우가 213개 중 37개(17.4%), 인증 연장조건 규정이 부재한 경우는 213개 중 59개(27.7%)

< 자료 :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 개선방안

10 이의신청 규정 마련 및 불합리한 인증기간 개선

○ 이의신청제도 도입을 통한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 품질인증 신청 탈락 시 이의신청제도를 두어 의견진술 기회보장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품질인증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소극적 통보제도 외에 관련정보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는 등 적극적 정보공개 검토

○ 과소하거나 과도한 인증기간 정비를 통해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고

※ 유효기간 부재, 자동연장, 지자체장이 유효기간을 조정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소·과도한 부담 개선

< 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 >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p style="text-align: center;">< 결과공개, 이의신청 예시></p> <p>제0조(상표의 사용허가) ① 00는 상표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후 하고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브랜드 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 <p>제0조(상표의 사용허가)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상표사용 허가 시에는 그 결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신청인은 상표의 사용 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p> |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p><u><신 설></u></p> | <p>부터 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 및 재심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
| <p>제0조 (인증상표 유효기간) 인증상표의 유효기간과 관련한 사항은 00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p> | <p>제0조 (인증상표 유효기간) ① 인증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0호의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0일 전까지 00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00는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심의토록 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토록 한다.</p> |

□ 평가대상 조문

- 조례로 운영하나 조례에 품질관리 규정이 없는 경우

| 운영 현황 | 브랜드 수(개) |
|------------|----------|
| 품질관리 규정 부재 | 65 |

※ 전체 브랜드 404개 중 조례로 운영 중인 213개 브랜드를 분석

- 조례가 있는 경우

제0조(품질관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판매촉진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제재규정의 적정성(1-1)

□ 문제점

11 품질관리 규정이 없거나 형식적 품질관리

- 품질인증 이후 조례로 규정되지 않는 분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품질관리 분야임

| 운영 현황 | 브랜드 수(개) |
|------------|----------|
| 품질관리 규정 부재 | 65 |
| 사후관리 규정 부재 | 19 |
| 사용취소 규정 부재 | 14 |
| 행정제재 규정 부재 | 59 |

※ 전체 브랜드 404개 중 조례로 운영 중인 213개 브랜드를 분석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조례에 품질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세부적 문제점으로는 품질관리가 선언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생산자 단체 등의 자체적인 품질 관리에 맡겨 놓아 품질관리에 한계

※ △△군의 경우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는 미 실시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도의 경우에는 품질관리 규정이 없으나 ○마크 인증부여 업체 대상 현장 모니터링(244곳)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

[잘못된 조례 운영 사례]

| 잘못된 규정 (예시) | 조례명 (예시 차원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에 대해 선언적 규정만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판매촉진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규정만 적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적인 품질관리에 맡겨놓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에게 사용승인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를 모호하게 규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 친환경우수농 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

□ 개선방안

㉠ 구체적인 품질관리 규정 마련 등 품질관리를 통한 브랜드 제고

- 선언적·추상적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품질관리 규정을 구체화하고, 자체적인 품질관리에 맡겨져 있는 경우 정기·부정기 행정조사 실시를 통해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 품질관리 확인 과정에서 승인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표시 정지,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재 조항 마련
 - 또한 품질관리 확인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칙이 아닌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개선
 - ※ 조례에서 그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정할 수는 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규칙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선 필요

< 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 >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p align="center">< 품질관리 예시 ></p> <p>제0조(품질관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판매촉진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 <p>제0조(품질관리) ① 00는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질인증 사용권을 부여한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0항에 따라 000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생산자 단체 등이 아닌 개인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품질관리인이 된다.</p> <p>③ 품질관리인은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한 생산, 제조,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품질관리인은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p> <p>⑤ 품질관리인이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 시에는 해당 생산자단체 등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⑥ 품질관리인의 자격·위촉·해촉·임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

□ 평가대상 조문

○ 조례로 운영하나 조례에 사후관리 규정이 없는 경우

| 운영 현황 | 브랜드 수(개) |
|------------|----------|
| 사후관리 규정 부재 | 19 |

※ 전체 브랜드 404개 중 조례로 운영 중인 213개 브랜드를 분석

○ 조례가 있는 경우

제0조(사후관리) ① 00는 우수농특산물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우수농특산물의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보완·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전문검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 문제점

12 지자체장 품질보증 인증제 사후관리 부실

○ 농수산물 품질인증제도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나,

- 사후관리 규정이 전혀 없거나(213개 브랜드중 19개 브랜드),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패발생 요인 내재

※ (잘된 사례) 인천광역시의 경우, 매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대상 농업인, 생산자 단체, 제조·가공업체 대상 실태점검 실시²⁸⁾

-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후관리 차원에서 시정·보완 명령 후 즉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은 보완

28)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생산지 및 품질인증품의 위생상태, 원료의 관내 생산품 사용여부,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 사항, 생산관리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출하 유통과정 전반(포장재 표시사항,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 여부)임

[잘못된 조례 운영 사례]

| 잘못된 규정 (예시) | 조례명 (예시 차원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구체적인 사후관리 요건이 없이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토록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인증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 ※ 1) 상표사용자에게 보완·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반기마다 농산물 출하실적을 제출토록 한 경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

○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보완 조치토록 하고 있으나, 상표 무단 사용 등이 여전하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음

※ 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재 인증의 심사가 없이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공품의 경우 인증 품목 외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타 품목에 대해서도 무단으로 상표를 부착·사용²⁹⁾

※ ●●광역시(「○○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의 경우, 조례가 아닌 규칙에서 시정·보완 미 이행 시 상표 사용 정지토록 규정

□ 개선방안

12 사후관리 규정 마련 및 과도한 부담 유발 사후관리 규정 완화

- 정기·부정기로 생산·출하·유통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시료 검사 의뢰 등 규정 마련을 통해 기준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그러나 즉시 상표사용 정지를 명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규정 개정

29) 대구경북연구원, “경북 우수농산물 유통실태 및 운영 활성화 방안, 2010년도

< 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 >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p align="center">< 사후관리 예시 ></p> <p>제0조(사후관리) ① 00는 우수농특산물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을 임명한다.</p> <p>② 조사공무원은 우수농특산물의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보완·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전문검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p> <p>③ 상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농산물 출하실적을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00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 <p>제0조(사후관리) ① 00는 품질인증 상표 사용품목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가공·제조·유통과정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보증품의 규격·품질 관련 요건의 적합성 등의 여부 2. 품질보증품의 가공용 원료 원산지 및 농수산물의 재배·사육지의 적합성 여부 3. 품질보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성분 검사 의뢰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표시정지·품질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삭 제></p> <p>③ 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표시정지,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④00는 품질인증 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상표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

□ 평가대상 조문

○ 조례로 운영하나 조례에 사용취소, 행정제재 규정이 부재한 경우

| 운영 현황 | 브랜드 수(개) |
|------------|----------|
| 사용취소 규정 부재 | 14 |
| 행정제재 규정 부재 | 59 |

※ 전체 브랜드 404개 중 조례로 운영 중인 213개 브랜드를 분석

○ 조례가 있는 경우

제0조(지정취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3.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5.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
6. 조사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 문제점

13 사용취소 등 행정제재가 미흡하거나 과도한 부담 부과

- 행정제재 규정이 없거나*,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한 경우 또는 위반 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는 등 담당자에게 과도한 재량 부여로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전체 브랜드 404개 중 조례로 운영 중인 213개 브랜드 조사 결과, 행정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는 59개 브랜드 ('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잘못된 조례 운영 사례]

| 잘못된 규정 (예시) | 조례명 (예시 차원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한 경우 ※ 허위과장 광고표시, 출하·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등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조사 위반 시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사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시 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토록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인증조례 |
|---|--|

□ 개선방안

13 행정제재 규정 마련 및 과도한 부담 유발 규정 개선

- 행정제재는 농수산물 품질 개선, 농어가 소득증대, 소비자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에 제재 규정 마련 필요
- 다만, 사용취소·중지·정지 등의 규정이 공무원의 자의적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은 완화 필요
- 또한 지정취소의 경우 당연취소와 임의취소로 나누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그렇지 않은 규제는 완화하여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고

< 예시 : 농수특산품 상표 관리 조례 >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p style="text-align: center;">< 행정제재 예시 ></p> <p>제0조(지정취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3.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 <p>제0조(지정취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

| 현 행 | 개선안(예시) |
|---|--|
| <p><u><신 설></u></p> <p>5.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p> <p>6. <u>조사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u></p> <p>7. <u><신 설></u></p> <p>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p> | <p>5.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u></p> <p>6. (생략)</p> <p><삭 제></p> <p>7. <u>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u></p> <p>② (생략)</p> |

VI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산림청/ 전(全) 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개선과제명 | 개선권고 관련법령 | 권고기관 | 조치기한 |
|------------------------------------|---|--------------------------|---------|
| 1.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운영·관리 강화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표법 -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 정비, 무단사용 관련 사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특허청 | '17. 12 |
| 2.러브미 및 쌀 품종관리 마크 운영·관리 내실화 | ○ 러브미는 법적근거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선정 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 '16. 12 |
| | ○ 쌀품종명 관리마크는 「양곡관리법」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 '16. 12 |
| 3.지자체장 품질 인증 조례 근거 마련·명확화 및 남של 방지 | ○ 무분별한 품질인증제도 운영 방지를 위해 조례로 제정·운영 ○ 품질인증 범위 명확화로 자의적 인증 방지 및 농·어가 보호 ○ 브랜드 남של 방지를 위해 품질인증 관련 심사위원회 기능 개편 | 전(全) 지방자치단체 | '16. 12 |
| | | 전(全) 지방자치단체 | '16. 12 |
| 4.지자체장 품질 인증 심사 기준·절차의 투명성 확보 | ○ 자의적 심사방지를 위해 심사기준 규정 ○ 심사위원회 규정 마련 및 위촉·심사 공정성 확보 ○ 이의신청 규정 마련 및 불합리한 인증기간 개선 | 전(全) 지방자치단체 | '16. 12 |
| 5.지자체장 품질 인증 품질관리, 제재 등 사후관리 철저 | ○ 구체적인 품질관리 규정 마련 ○ 사후관리 규정 마련 및 과도한 부담유발 사후관리 규정 완화 ○ 행정제재 규정 마련 및 과도한 부담유발 규정 개선 | 전(全) 지방자치단체 | '16. 12 |

※ 조치기한 설정 : 법률 및 조례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단, 1.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운영·관리 강화는 2년)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예시)은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